

(재)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공시

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17년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경영공시 합니다.

I. 경영목표

경 영 목 표

수산식품 브랜드화 및 미래 산업화 추진

추진 과제

수산식품
연구개발

지역대표
브랜드개발

수산식품
산업육성

기업지원
체계확립

추진 전략

- 목포 대표 수산식품 브랜드 제품 및 사업화
-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
-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및 연구
- 수산식품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
-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
- 수산식품 기업의 창업 보육 및 인력 양성

Ⅱ. 예산 총칙

제1조 (총칙) 2017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단위 : 천원)

수 입		지 출	
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
합 계	1,686,675	합 계	1,686,675
사 업 예 산			
소 계	1,686,675	소 계	1,686,675
1. 사업수익	210,000	1. 사업비용	1,666,675
가. 연구용역사업 수익	50,000	가. 인건비	598,890
나. 시설사용료 수익	120,000	나. 경 비	1,067,785
다. 임대료 수익	40,000	- 복리후생비 (4대보험, 급량비)	53,127
		- 여비 및 교육훈련비	44,198
		- 일반운영비	522,868
		- 연구개발비	259,992
		- 시설비	22,000
		- 자산취득비	165,600
2. 사업외수익	1,476,675	2. 사업외비용	20,000
가. 자치단체 출연금	800,000	가. 예비비	20,000
나. 출연금 이월금	653,675		
다. 이 자 수 입	10,000		
라. 기 타 수 입	13,000		

제2조 사업수입 210,000천원에 대하여 사업비용 1,666,675천원의 부족액 1,456,675천원은 사업외 수입금(목포시 출연금 및 기타수입) 으로 충당한다.

제3조 이사장은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인건비·부채상환 원리금은 전용할 수 없다.

제4조 이사장은 사업에 대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고 그 한도액은 7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단, 공사, 제조, 조달 또는 구매중에 있는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 법인사업을 위하여 목포시로부터 법인에 보조하는 금액은 800,000천원이다.

제7조 이사장은 예기치 않은 상황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2016년 12월 1일

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이사장

Ⅲ. 운영계획

(단위 : 천원)

계 획 별	구 분	당 년 도	전 년 도	비 고
1. 임대사업	사 무 실 임 대	15기업	15기업	
2. 시설사용, 연구용역 수익	시설사용, 연구용역 수 익	170,000천원	143,585천원	
3. 대행사업	민간대행사업(이월)	-	100,000천원	
4. 출연금	계	1,453,675천원	1,100,000천원	
	시 출 연 금	800,000천원	700,000천원	
	시출연금(이월)	653,675천원	400,000천원	
5. 인력관리계획	계	11명	11명	
	센 터 장	1명	1명	
	행 정 지 원 팀	2명	2명	
	연 구 기 획 팀	3명	4명	
	생 산 경 영 관 리 팀	5명	4명	
6. 재정계획	사 업 수 익 (계)	233,000천원	333,585천원	
	임 대 사 업	40,000천원	40,000천원	
	시 설 사 용 료 수 익	120,000천원	143,585천원	
	연구용역사업수익	50,000천원	50,000천원	
	기 타 수 입	23,000천원	-	
	대행사업비(이월)	-	100,000천원	
	사 업 비 용 (계)	1,666,675천원	1,413,585천원	
	인 건 비	598,890천원	608,513천원	
	경 비	1,067,785천원	805,072천원	
	기 타 비 용	-	-	